

### 3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

[본조신설 2015. 6. 22.]

##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

**제61조(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)** ①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,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,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(換積)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
②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·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8. 6. 12.>

1. 물류 관련 정보·기술·인력의 국제교류
  2.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, 공동조사, 연구 및 기술협력
  3.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,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
  4.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·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
  5.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
  6.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
  7.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
  8.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④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·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- ⑤ 시·도지사는 제1항·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,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8. 6.>

**제62조(공동투자유치 활동)** ①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(공항·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·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·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
②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·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8. 6.>

**제63조(투자유치활동 평가)**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,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